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발의연월일 : 2023. 12. 21.

발 의 자 : 윤재갑 · 정경희 · 홍성국
최혜영 · 이동주 · 이용빈
윤영덕 · 이병훈 · 문진석
주철현 · 오기형 · 장동혁
지성호 · 이인선 · 임병현
전주혜 · 서범수 · 서정숙
김영식 · 엄태영 · 임오경
유정주 · 신영대 · 강준현
유동수 · 김진표 · 박주민
장경태 · 백종헌 · 조명희
의원(30인)

수정이유 및 수정주요내용

디지털 대전환 시대에 대응한 AI기술 활용으로 공교육의 질을 획기적으로 제고함으로써 사교육 수요를 흡수하고 교육·디지털 인프라가 부족한 소외지역 학생들의 교육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적기임. 이를 위해 특별교부금의 비율을 상향하고, 상향된 비율에 해당하는 재원은 초·중등 교원의 인공지능 기반 교수학습 역량 강화 사업 등에 한정하여 활용함으로써 지역별 격차 없이 전국적으로 디지털 기반 초·중등 공교육 혁신을 뒷받침할 필요성이 있음.

2023년 12월 18일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과 시·도교육감 간담회에서

대다수의 시·도교육감들이 이러한 취지와 필요성에 공감하였음.

다만, 시·도교육감들은 교원 역량 강화가 초기 수년간 집중적으로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특별교부금 비율 상향 기간을 6년보다는 3년으로 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음. 또한, 지방교육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1%p 상향 보다는 0.8%p 상향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음.

이에 시·도교육감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동 법안의 적용기간을 개정안의 2024년부터 2029년까지 6년에서 2024년부터 2026년까지 3년으로 수정하고, 특별교부금 상향비율을 1%p에서 0.8%p로 수정하려는 것임(안 제5조의3 및 부칙 제2조).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5조의3제1항 중 “2029년 12월 31일”을 “2026년 12월 31일”로, “100분의 96을”을 “1,000분의 962를”로, “100분의 4”를 “1,000분의 38”로 한다.

안 제5조의3제2항제1호 중 “1,000분의 450”을 “380분의 180”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1,000분의 225”를 “380분의 90”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1,000분의 75”를 “380분의 30”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1,000분의 250”을 “380분의 80”으로 한다.

안 부칙 제2조 중 “2029년 12월 31일”을 “2026년 12월 31일”로 한다.

수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수정안
<신설>	제5조의3(교부금의 재원 배분 및 특별교부금의 교부에 관한 특례) ① 제3조 제3항에도 불구하고 2029년 12월 31일까지는 보통교부금 재원은 같은 조 제2항제2호에 따른 금액에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금액의 100분의 96을 합한 금액으로 하고, 특별교부금 재원은 같은 호에 따른 금액의 100분의 4로 한다.	제5조의3(교부금의 재원 배분 및 특별교부금의 교부에 관한 특례) ① ----- ----- -- 2026년 12월 31일----- ----- ----- ----- --1,000분의 962를----- ----- ----- -----1,000분의 38-----.
	② 제5조의2제1항에도 불구하고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배분된 특별교부금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교부한다.	② ----- ----- ----- ----- ----- -----.

[illegible]

5

3. 보통교부금의 산

정기일 후에 발생
한 재해로 인하여
특별한 재정수요
가 생기거나 재정
수입이 감소하였
을 때 또는 재해
를 예방하기 위한
특별한 재정수요
가 있는 때: 특별
교부금 재원의 1,
000분의 75

4. 다음 각 목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
는 사유로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거
나 재정지원이 필
요할 때: 특별교
부금 재원의 1,00
0분의 250

가. 「초·중등교
육법」 제21조
에 따른 교원
에 대한 인공
지능 기반 교

3. -----

 -----3

80분의 30

4. -----

 -----380분

의 80

가. ~ 다. (개정
 안과 같음)

수학습 역량
강화 사업 등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을 위
한 특별한 재
정수요가 있는
때

나. 초등학교 · 중
학 교 · 고 등 학
교 방과후학교
사업 등 방과
후 교육의 활
성화를 위한
특별한 재정수
요가 있는 때

다. 가목 또는 나
목과 관련하여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 또는
방과후 교육
활성화 성과가
우수한 지방자
치단체에 대한
재정지원이 필
요한 때

③ 제2항제4호에

③ (개정안과 같음)

	<u>따라 교부되는 특</u> <u>별교부금의 교부시</u> <u>기, 절차 및 우수한</u> <u>지방자치단체의 선</u> <u>정기준 등 필요한</u> <u>사항은 대통령령으</u> <u>로 정한다.</u>	
	부 칙	부 칙
	제2조(유효기간) 제5	제2조(유효기간) ---
	<u>조의3의 개정규정</u>	-----
	<u>은 2029년 12월 3</u>	-- <u>2026년 12월 3</u>
	<u>1일까지 효력을 가</u>	<u>1일</u> -----
	<u>진다.</u>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3(교부금의 재원 배분 및 특별교부금의 교부에 관한 특례) ①

제3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2026년 12월 31일까지는 보통교부금 재원은 같은 조 제2항제2호에 따른 금액에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금액의 1,000분의 962를 합한 금액으로 하고, 특별교부금 재원은 같은 호에 따른 금액의 1,000분의 38로 한다.

② 제5조의2제1항에도 불구하고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배분된 특별교부금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교부한다.

1. 「지방재정법」 제58조에 따라 전국에 걸쳐 시행하는 교육 관련 국가시책사업으로 따로 재정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지원하여야 할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거나 지방교육행정 및 지방교육재정의 운용 실적이 우수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재정지원이 필요할 때: 특별교부금 재원의 380분의 180
2. 기준재정수요액의 산정방법으로 파악할 수 없는 특별한 지역교육 현안에 대한 재정수요가 있을 때: 특별교부금 재원의 380분의 90
3. 보통교부금의 산정기일 후에 발생한 재해로 인하여 특별한 재정

수요가 생기거나 재정수입이 감소하였을 때 또는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는 때: 특별교부금 재원의 380분의 30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거나 재정지원이 필요할 때: 특별교부금 재원의 380분의 80

가. 「초·중등교육법」 제21조에 따른 교원에 대한 인공지능 기반 교수학습 역량 강화 사업 등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을 위한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는 때

나.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방과후학교 사업 등 방과후 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는 때

다. 가목 또는 나목과 관련하여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 또는 방과후 교육 활성화 성과가 우수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재정지원이 필요한 때

③ 제2항제4호에 따라 교부되는 특별교부금의 교부시기, 절차 및 우수한 지방자치단체의 선정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제5조의3의 개정규정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u>제5조의3(교부금의 재원 배분 및 특별교부금의 교부에 관한 특례) ① 제3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2026년 12월 31일까지는 보통교부금 재원은 같은 조 제2항제2호에 따른 금액에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금액의 1,000분의 962를 합한 금액으로 하고, 특별교부금 재원은 같은 호에 따른 금액의 1,000분의 38로 한다.</u> <u>② 제5조의2제1항에도 불구하고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배분된 특별교부금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교부한다.</u> <u>1. 「지방재정법」 제58조에 따라 전국에 걸쳐 시행하는 교육 관련 국가시책사업으로 따로 재정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지원하여야 할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거나 지방교육행정 및 지방교육재정의 운용실적이 우수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u>

재정지원이 필요할 때: 특별
교부금 재원의 380분의 180

2. 기준재정수요액의 산정방법
으로 파악할 수 없는 특별한
지역교육현안에 대한 재정수
요가 있을 때: 특별교부금 재
원의 380분의 90

3. 보통교부금의 산정기일 후에
발생한 재해로 인하여 특별한
재정수요가 생기거나 재정수
입이 감소하였을 때 또는 재
해를 예방하기 위한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는 때: 특별교
부금 재원의 380분의 30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특별한 재정
수요가 있거나 재정지원이 필
요할 때: 특별교부금 재원의
380분의 80

가. 「초·중등교육법」 제21
조에 따른 교원에 대한 인
공지능 기반 교수학습 역
량 강화 사업 등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을 위한 특
별한 재정수요가 있는 때

나. 초등학교·중학교·고등

학교 방과후학교 사업 등
방과후 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는 때

다. 가목 또는 나목과 관련하
여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
또는 방과후 교육 활성화
성과가 우수한 지방자치단
체에 대한 재정지원이 필
요한 때

③ 제2항제4호에 따라 교부되
는 특별교부금의 교부시기, 절
차 및 우수한 지방자치단체의
선정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대
통령령으로 정한다.